



제418회국회(임시회)
제 6 차 국 방 위 원 회

군인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 대상 확대〉

■ 김병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598)

2024. 11.

국 방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오 명 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병주의원 등 13인
2. 발의연월일 : 2024. 8. 6.
3. 회부연월일 : 2024. 8. 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군인에게 군 숙소인 관사(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또는 간부숙소(부양가족이 없는 군인)와 같은 주거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양가족이 없는 초급간부 등의 경우에는 관사 입주자격이 없기에 주로 간부숙소에 입주하며, 만약 간부숙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부담으로 전·월세 자금을 마련하여 거주하는 실정임.

이에 간부숙소 부족으로 주거지원을 받지 못하는 초급간부 등에게 전·월세를 지원받게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주거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또한 현행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군 숙소를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로 규정하고 있음. 독신자숙소에서 ‘독신’은 배우자가 없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임. 그러나 기혼자 중 근무지가 원거리로 인해 가족과 떨어져 사는 군인의 경우 독신이 아님에도 독신자숙소에 거주

하기 때문에 ‘기혼독신자숙소’라는 명칭으로 운영해왔음.

‘미혼’, ‘기혼’, ‘독신’이라는 명칭을 혼합해 사용해온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09년 「국방·군사시설기준」에서 사용되던 ‘독신자숙소’는 ‘간부숙소’로 명칭이 수정된 바 있음. 또한, 군인 주거지원 관련 훈령인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는 2014년부터 독신숙소를 간부숙소로 변경해 운영해왔음.

따라서 이에 맞춰 군 주거지원의 근거법령인 「군인복지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독신자숙소를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고자 함(안 제9조 제1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군 숙소¹⁾**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²⁾**에 대하여 **법 제9조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등³⁾을 제공토록 하고,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임.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은 <u>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u> 제공한다.	제9조(군 숙소 지원 등) ① ----- ----- ----- ----- ----- ----- ----- ----- ----- ----- ----- ----- ----- ----- ----- ----- <u>군</u> <u>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u> --- -----,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1. <u>관사 또는 간부숙소</u>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2. (현행과 같음)

1) 관사 또는 간부숙소(독신자숙소)

2)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서관 제외

3) 법 제9조제1항제2호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규정하고 있고, 군인복지기금에서는 이중 나목에 해당하는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에 대한 지원만 실시하고 있음.

당하는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가.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의 대부 나. 임대차보증금 또는 전세금 용도로 대출한 자금에 대한 이자 다. 월차임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	-----------------------

□ 현행법은 관사를 제공받지 못한 군인에 한하여 국가가 법 제9조 제1항제2호의 가목부터 다목까지 3가지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이에 따라 현행 독신자숙소 입소자격이 있는 부양가족이 없는 간부는 독신자숙소에 거주하지 않고, 별도로 본인의 부담으로 군부대 인근의 민간주택을 임차하더라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현재 군부대별로 독신자숙소의 거주여건의 편차가 큰 편이고, 일부 군부대는 독신자숙소의 부족으로 1인 1실이 아닌 2인 1실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고, 독신자숙소의 노후화로 거주여건이 매우 좋지 않은 군부대들도 있음.

독신자숙소 현황을 살펴보면, 2024년 1월 기준 전국에 107,733실의 독신자숙소가 있고, 부족분은 12,342실 및 노후 독신자숙소는 18,392실로 총 30,734실이 노후 및 부족분 독신자숙소이고, 이 중에서 17,212실은 개선 중이고,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독신자숙소는 13,522실임.

이와 같이 독신자숙소가 부족하거나 거주여건이 열악한 군부대들에 근무하는 간부들은 개인의 부담으로 군부대 주변에 민간주택을 임대하여 거주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이에 개정안은 군 숙소를 제공받지 못한 군 간부에게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 규정에 따른 민간주택임대자금의 지원 규정에 근거하여 군인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에서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주거지원계정은 자체적인 수입원이 없음에 따라 여유자금 등의 부족으로 2025년도 군간부전세자금이자지원사업의 재원을 예외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여 집행하여야 할 정도로 재정상태의 여유가 없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심사 시 주거지원계정의 재정 확충방안도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국방부는 부양가족이 없는 간부의 주거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의 취지 내지 방향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개정안의 ‘전·월세 지원’은 ‘26년까지 1인1실 독신자숙소의 제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현 국방부의 군 주거지원 정책과 연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임.

기획재정부는 개정안의 ‘전·월세 지원’은 간부숙소를 직접 확보(건축, 매입, 임차 등)하여 지원하는 국방부의 군 주거정책 방향에 부합하지 않고, ‘26년까지 1인 1실 간부숙소 제공을 목표로 관련한 재정을 집중투자하고 있는바, 현행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임.⁴⁾

□ 한편, 독신자숙소의 명칭을 간부숙소로 변경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실제 독신자숙소를 이용하는 군인 중에는 미혼간부 외 근무지 등을 이유로 하는 기혼별거간부 등도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간부숙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타당하다고 보임.

또한, 현행법에서는 독신자숙소라고 하는데 반해,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에서는 이를 간부숙소로 칭하고 있는 등 명칭의 통일성 측면에서도 보다 적절한 명칭인 간부숙소로 변경하는 것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4)연차별 확보계획 : (‘24년) 3,665실·3,468억원, (‘25년) 2,276실·4,955억원, (‘26년) 6,401실·6,289억원

<독신자숙소 및 간부숙소 관련 명칭 규정>

「군인복지기본법」

제9조 (군 숙소 지원 등)

① 국가는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군인(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 및 병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에서 같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거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생략)

1. 관사 또는 독신자숙소(이하 이 조에서 "군 숙소"라 한다)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군 주거시설”이란 국방인사정보체계 주거관리시스템에 등재된 관사와 간부숙소를 말한다.

11. “간부숙소”란 국가가 미혼간부 또는 가족과 별거하는 기혼간부에게 제공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문 의 처

02)6788-5304